

부정선거 방지 공고문

정관 제12조 1항의 임원선출을 위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7대 임원선거에 대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함.

- 아래 -

■ 제7대 임원선거 금지행위 및 제한사항

2017.3.27.부터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함.

- 1) 금품 또는 향응, 식사 제공 행위
- 2) 보직의 약속이나 사업 등의 이권을 약속한 행위
- 3)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, 음해하는 행위
- 4) 후보자 개인의 광고물이나 유인물 제작·배포 또는 단체 비방행위
- 5) 후보자 사퇴 강요 행위
- 6) 선관위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
- 7) 선거일정을 무시한 사전 선거운동
- 8) 기타 공직 선거법 및 일반 관례에 준하는 선거위반 행위

■ 위반처리

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요강을 위반하거나 부정 선거가 명백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이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처분함.

2017. 3. 27

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
